

일제와 조선 교육정책 : 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郭眞吾*

(e-mail : ojkwak@nahf.or.kr)

目次

I. 연구목적	IV. 제3차 교육령과 조선
II. 제1차 교육령과 조선	V. 제4차 교육령과 조선
III. 제2차 교육령과 조선	VI. 결론 및 시사점

I. 연구목적

근대 국가들에 의한 교육정책의 일반적 유형은 국가의 통치형태와 관련시켜 통제적 교육정책, 자유주의 교육정책, 민주적 교육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통제 형은 과거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었던 엄격한 국가의사(國家意思) 투철형(透徹型)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유주의 형은 19세기 말까지 영국에서 전형(典型)을 보여 온 것으로, 국가는 재정적 보조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교육 자체에는 직접적인 관여를 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세 번째인 민주주의 형은 국가 기준에서 대강(大綱)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이나 국민의 노력에 기대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일제하 일본에 의한 식민지조선에 대한 교육정책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통제 형이라 할 수 있겠다.¹⁾ 그래서 이 연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치학

1) 홍문종(2003) 「조선에서의 일본식민지교육정책 1910~1945」 『학지사』, pp. 17~33. 본 연구 제목이 “일제와 조선 교육정책”이고, 일본의 조선식민지에 대한 교육정책임을 감안했을 때 본문내용에 등장하는 용어 특히 ‘조선’ 또는 ‘식민지조선’이 한국어로도 표기 될 수도 있지만 필자는 ‘조선’으로 표기하고 있다.

구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조선에 교육정책이 1차에서 4차까지 ‘조선교육령’²⁾을 통해서 어떻게 통제적 교육정책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식민지교육정책은 이후 태평양전쟁에 즈음해서는 조선인에 대한 동화정책으로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초기교육정책은 동화주의 성격을 가미한 무단통치의 형태를 띠었고, 3.1운동을 겪으면서 문화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는 식민지 조선을 약간의 정치의식을 가진 지역으로 간주하고 일본의 일부인 것처럼 동화시키는 정책에 시발점에 서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일본에 의한 제1차 교육령(칙령 제229호)(1911.8.22~1922.2.4), 제2차 교육령(칙령 제19호)(1922.2.4~1938.3.3), 이 혼용되어 실시되었지만 이 시기 조선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교육을 위한 법령과는 독립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3차 교육령(칙령 제103호)(1938.3.3~1943.4.1), 제4차 교육령(칙령 제113호)(1943.4.1~1945.8.15) 등이 발령되었는데 이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중에 발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3~4차 교육령이 제1~2차 교육령과 달리 조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즉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지 않고 실시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동화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조선의 고유한 풍속이나 관습을 무시하고 창씨개명과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배울 것을 강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유문화를 파괴하며 한민족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교육정책을 펴게 된다.

본 논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조선교육사(이만규, 1947),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정재철, 1985), 한국교육사료집성-개화기편Ⅳ(한기연 외, 1994), 갑오개혁 전후 교육정책 전개과정 연구(김경미, 박사학위논문, 1998), 조선에서의 일본식민지 교육정책: 1910~1945(홍문중, 2003), 조선총독부 역사교과서 분석 I, 제1차 조선교육령시기(동북아역사재단, 2009), 조선총독부 역사교과서 분석 II, 조선교육령시기(동북아역사재단, 2010) 등이 있다. 하지만 상기 선행연구들은 당시의 조선과 일본의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총독부발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거나 총독부의 조선교육정책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일본의 對朝鮮교육정책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조선에 대한 교육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일본의 정책이 팽창주의, 침략주의, 군국주의, 식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히는데 있다.

2) 본 논문은 1차에서 4차에 걸친 일본의 ‘조선교육령’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문에 등장하는 ‘조선교육령’은 이후 교육령으로 부르기로 한다.

II. 제1차 교육령과 조선

식민지정책의 목적은 식민지를 본국을 위하여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에 있는데 방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본국인을 식민지에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원주민을 쫓아내고 여기에 본국과 동질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주민의 거주를 인정하고 그 사회를 개조하여 본국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영국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하여 사용한 방법은 전자의 예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후자의 방법을 취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식민지정책의 지도 원리가 원주민 정치의식의 성장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일본에 의한 조선의 초기 식민지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시작되었다. 첫째, 종속주의 개념에 의한 조선인 교육방법인데, 당시 조선이 무지몽매하고 정치적 자각을 가지지 못한 지역이라는 차원에서 철저한 수탈이 이루어진다. 이는 조선인에 대하여는 우민정책(愚民政策)이 취해졌기에 참정권 등은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경제개발은 조선인에 대한 이익이 무시되고 일본 본국이 이익중심으로 제한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조선인에 대한 교육정책은 기존의 조선역사왜곡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식민지조선에 대한 정책은 강압과 본국인과의 차별정책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제1차 교육령이 시행될 당시의 일본에 의한 조선 통치현황은 헌병이 일반 경찰 행정까지 담당하면서,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즉결 처분권 등을 갖고 있었다. 조선 총독은 일본군 헌역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고, 일왕에 직속되어 입법권·사법권·행정권 및 군대 통솔권까지 장악하고 있었으며 내각이나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³⁾ 총독의 아래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존재하였다. 일본은 2만여 명의 헌병 경찰과 헌병 보조원을 한반도 전국에 배치하여 무단 식민 통치를 자행하였다. 헌병 경찰은 치안업무와 함께, 독립 운동가 색출과 기타 민생관련 전반에 관여하였는데, 여기에 당시 통치의 강압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조선 태형령으로, 갑오개혁 때 폐지된 태형을 조선인에게만 적용하여 처벌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조선인의 각종 단체가 해산 당하였는데, 1911년 신민회를 해산시킨 105인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일본은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 을 통해 조선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제1차 교육령이 시작되어서는 ‘3面1教 主義’를

3) 한국에서는 日王, 북한에서는 倭王, 영어로는 the Emperor of Japan, 일본에서는 천황(天皇텐노)으로 부른다. 한국에서 현재 일왕으로 부러지고 있기에 이 논문에서는 日王으로 한다.

채택하고 수업 기간을 축소하여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축소하였다.⁴⁾ 여기에 학제는 보통교육과 전문학교, 실업학교만 인정하여 대학교육이 불허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근대 시기부터 존재한 개량서당이나 애국계몽세력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서당 규칙과 사립학교 규칙을 통해 탄압하였다. 제1차 교육령은 총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제2조의 경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기르는 본의로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는 순종적인 신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3조는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맞도록 이를 배운다.”고 했는데, 이는 일본이 조선에 대해 하급교육을 염두 해 두고서 교육이 사회발전과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5조는 “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가르쳐 주고, 특히 국민 된 성격의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즉, 일본어가 조선에서의 모국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제1차 교육령 시행초기부터 조선어와 한자가 한 개 과목으로 통합되고 일본어가 공식표준어가 되어 조선어는 학교교육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는 제8조에 관련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보통학교는 국민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통교육을 시키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고 국어(일어)를 가르치며 德育을 베풀어 국민 된 성격을 양성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이었다. 다시 말해서 조선어는 더 이상 표준어가 아닌 셈이 된 것이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학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습기간은 3년인 지역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4년이었다. 학생들은 8세가 되면 초등교육을 받게 되는데, 주당 수업시간은 제1차 교육령이전의 28~30시간에서 26~28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특별활동시간에는 일본어, 조선어, 한자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교장선생의 재량으로 시간이 편성되었다. 이에 따른 관련근거로는 제1차 교육령 9조와 10조를 들 수 있는데, “제9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8세 이상인자로 한다.” 결국 이는 조선어 교육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졌다. 이후 일본어 과목은 10학점을 이수해야했지만 조선어와 한자는 합해서 6시간만 이수 할 수 있게 되었다.

상기 내용에서도 보았지만 초등학교교육에서의 조선어교육시수감소는 교사교육에도 반영되었다. 특히 합방이후 일본은 실용교육을 위해 초등교원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초등교육을 위한 교사양성과정에서 당시 국가표준어였던 일

4) “3面1敎主義”는 3개의 면단위를 하나로 묶어 1개의 초등학교를 세웠기에 학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학교에 등교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본어는 주당 5~7시간 배당되었으나 조선어와 한자는 통합과목이면서도 2시간이 배당되었다. 그리고 제1차 교육령 시행과 함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임시 교사 양성소를 합법화하여 경성 상급보통학교를 부설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조선학생들은 예외 없이 일본어, 일본역사, 일본지리 등을 이수해야만 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제1차 교육령 14조를 들 수 있는데, “관립 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 또는 교원 속성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 연한은 1년, 교원 속성과의 수업 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고 교원 속성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제2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이처럼 제1차 교육령을 통해서 본 일본의 조선 교육정책은 일본이 주장하는 조선인을 위한 교육정책과는 거리를 둔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교육령에 즈음해서 일본의 對조선 식민정책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하고 일본인의 토지 수탈을 원활하기 위해 1912년부터는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했다. 일본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기한부 신고제로 시행,⁵⁾ 이를 잘 알지 못한 농민들의 토지를 침탈하였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마을이나 문중의 토지, 정부와 왕실의 토지 등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겼다.⁶⁾ 침탈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일본 이민자들에게 싼 값에 팔렸고 이로 인해 식민지조선에서의 일본인증가는 일본인학생의 증가로 이어졌고 조선에서의 일본인을 위한 학교증설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1차 교육령시행 시기는 일본에 의해 학습권만 빼앗긴 게 아니라 경제권도 수탈당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일제에 의한 제1차 교육령은 일본에 의한 조선식민지정책에 크게 두 가지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제국주의적 계획에 따라 선량하고 충성스런 제국신민의 양성과, 둘째, 초등학교 실업교육강화를 통한 일본의 새로운 독점자본체제에 맞추어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었다.⁷⁾ 이후 일본본토수준의 초등교육이 가능해진 조선에는 제1차 교육령시행 당시 약3만 명이던 일본인이 제2차 교육령시행에 즈음한 1920년에는 약 17만 명에 이르렀다.

5) 1912년에는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사업을 촉진시키는 한편 보증을 도모하고 같은 해 발표된 조선 민사령은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일본 민법을 적용했다.
 6)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会社, 동척)는 조선의 경제 독점과 토지·자원의 수탈을 목적으로 일본제국이 세운 국책회사이다.
 7) 이는 제1차 교육령 전문 제 1장 강령 2조와 3조에 해당된다. “제2조 -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기르는 본의로 한다. 제3조 -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맞도록 이를 배분다.” 이다.

III. 제2차 교육령과 조선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와중에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함에 따라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평화적인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일본이 이를 적극적으로 탄압하여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으나, 산발적인 독립 운동이 하나로 일치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총독부의 통치 정책 방향 또한 급선회하게 되었다. 1919년 8월 제2대 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로 교체하고, 같은 달 총독부관제를 개정하여 헌병경찰제를 폐지하였다. 같은 시기 일본제국 내에서도 정당정치인 출신 하라 다카시(原敬)가 수상에 취임하여 조선의 식민지 방침을 이른바 ‘내지연장주의(内地延長主義)’⁸⁾로 전환하는 방침을 취했다. 제2차 교육령은 조선인교육뿐만 아니라 조선 내의 일본인교육을 규정하는 통일법령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조선 내에서 대학 및 사범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제2차 교육령은 이전 교육령의 문제점을 수정하게 되는데, 첫째, 조선인 교육과 조선 거주 일본인 교육에 대한 법률을 하나로 통일했다. 조선인 대상 각급학교의 수업연한을 일본인 대상 학교의 그것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보통학교(6년), 고등보통학교(5년), 여자고등보통학교(5년 또는 4년)등 이었다. 그러나 보통학교는 4년 또는 5년제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대학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범학교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였다. 6년제 사범학교-보통과(5년), 연습과(1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별한 경우 일본인이 조선인 학교에, 조선인이 일본인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로는, 제2차 교육령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지역의 정황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보통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연령 6년 이상으로 한다.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에 수업연한 2년의 고등과를 둘 수 있다. 고등과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보통학교에 보습과를 둘 수 있다. 보습과의 수업연한 및 학력자격에 관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와 9조는, “여

8) 내지연장주의란 이른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취지에 따라 차별 철폐를 기하고 내지(일본본토)와 동일한 제도에 의하는 주의’로서 이에 근거하여 제1차 교육령 하에서 유지되어 온 학교종류 및 수업연한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학제를 취한다는 의도에서 교육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어 1922년 제2차 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 또는 4년으로 한다. 단 지역의 정황에 따라서 3년으로 할 수 있다. 여자고등 보통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수업연한이 3년의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보통학교 고등과를 졸업한자 또는 조선총독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보습과를 둘 수 있다. 보습과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등 이다. 이처럼 제2차 교육령에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에 대한 교육차별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1921년과 1922년 사이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어와 한자시간을 3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시켰고 반면 일본어시간은 58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렸다. 일본이 1919년 3.1운동 이후 제2차 교육령과 함께 실시했다는 문화정치가 오히려 동화정책을 추진하기위한 과정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2차 교육령에서 조선의 역사와 지리는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일본관련 내용만 교과목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제2차 교육령이 겉으로는 조선인학생과 일본인학생의 평등한 교육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시되었던 교과과정에는 조선인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또한 제2차 교육령이 실시되기 이전인 1921년에 서울에 사범학교(경성사범학교)를 설립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인교사 지원생을 돕기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이후 1922년 4월 제2차 교육령이 시행되면서 사범학교는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후 일본정부는 조선에 일본신민을 기르기 위해 조선의 주요 도시에 공립사범학교를 설립하는데 과정은 지역에 따라서 2년제 또는 3년제 교과과정이었다. 조선의 최초의 공립사범학교는 1929년에 평양과 대구에 건립되었다.⁹⁾ 이후 서울여자사범학교(1935), 전주사범학교(1936), 함흥사범학교(1937), 광주사범학교(1938), 공주여자사범학교(1938)등이 세워졌다.

그러나 제2차 교육령은, 조선인들의 기대에는 부합하지 못했다. 이유는 1931년 일본에 의한 만주침략과 일본국내의 정치경제문제의 부각으로 조선인교육은 농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인력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이 조선총독부에 협력과 순종정신을 강조하는 덕목이 추가되었다. 이에 근거한 제2차 교육령은 제 26조인데, “본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립학교, 특수한 교육을 하는 학교 기타 교육시설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

9) 1922년 2월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제2차 교육령과 사범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1923년에 평안남도 공립사범학교가 평양에 설치되어 특과(特科)와 강습과를 두고 주로 한국인 초등교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29년 4월에 조선교육령 중 사범학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각 도에 설치된 특과사범학교를 폐지하고 대신 각 도별로 심상과를 두는 관립사범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1929년 6월에 제1차로 관립평양사범학교가 신설되었다.

한다.”이었다. 이는 단일한 교육령아래 조선인교육과 조선駐在 일본인교육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본인교육은 일본제국의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의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제2차 교육령 안에서 조선인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일본인은 ‘국어를 상용하는 자’로 표현되어 민족별 別學體制가 유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범학교에서 실업교육과목에 할당한 시간은 5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났고, 반면 영어시간은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은 조선인에게는 조선어시수 감소와 상대적으로 일본어 또는 일본관련 교과목의 증 개설을 가져왔다. 더 나아가서 사범학교 증설은 조선에서의 내선일체(內鮮一體)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제2차 교육령이 조선인들의 교육 요구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교육칙어 조항 폐지, 교육목적 조항 누락, 일선공학의 소극적 도입 등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식민통치의 이상과 원칙이라는 입장과 식민지 교육현실과 특례라는 입장차이로 인해 일본인과 조선인을 동일한 교육제도로 같이 교육한다는 일본 본국 정부의 내지연장주의 방침은 이름뿐인 원칙에 머물렀다. 그 결과 제2차 교육령 개정을 통해 조선에는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가 별도의 계통으로 존재하는 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처럼 제2차 교육령은 개정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교육 요구, 일본 본국 정부의 식민지 통치 정책, 조선총독부의 정책 시행이 서로 대립 조정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제2차 교육령은 일본에 의한 조선식민지정책에 크게 세 가지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일신동인(一身同人, Universal brotherhood), 내적으로서 한 몸(Internally one body) 등의 미명을 내세워 조선인들을 점점 더 일본화 함을 들 수 있고, 둘째, 일본어와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킴으로써 조선인들을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시도와, 그리고 셋째는, 양적으로 볼 때 일반학교교육을 확대하여 1차 세계대전이후 국내의 산업 확장에 따라 경영자들의 점증하는 요구에 대응하기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제2차 교육령은 초기 계획했던 조선인학생과 일본인학생에 대한 교육차별철폐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3차 교육령으로 넘어가게 된다.

IV. 제3차 교육령과 조선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본제국은 조선에서의 식민지 통치 방침을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에 입각한 강력한 동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일환으로 조선인 교육기관과 일본인 교육기관의 명칭을 통일하는 등의 교육개혁 정책을 전개하였다. 교육령을 통한 전시체제 구축의 움직임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시작되어 1930년대에 이른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제3차 교육령에서는 군사교육과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교육의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1936년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총독에 부임하고 난 뒤 1년이 채 못 되어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전쟁에 필요한 물자공급과 인력지원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 朝日간의평등개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는 조선청년들을 일본군에 동원하기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면에서도 평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교육에 대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하나가 소학교 규정이었다. 예를 들면, 조선의 보통학교는 일본에서는 초등학교라 불리어졌다. 제3차 교육령 이후에는 조일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조선의 보통학교도 보통초등학교(Ordinary primary school)라 불리며 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바뀌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선인 보통초등학교는 대부분이 4년제였으나 일본인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모두가 6년제였다. 이는 이후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조선인학생과 일본인학생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제3차 교육령도 제2차 교육령과 별 차이 없이 무늬만 조일평등을 외치는 구호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제3차 교육령은 조선인 초등교육과 일본인 초등교육이 법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실제로 ‘국어를 상용하는 자’(일본인)를 위한 소학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조선인)를 위한 소학교가 구별되었으며 교과과정도 동일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학교규정’에서 소학교는 6년제 심상(尋常)과로만 이루어진 심상소학교와 6년제 심상과 및 2년제 고등과를 함께 갖춘 고등소학교로 구성되었지만, 조선인 대상 소학교는 거의 대부분 심상소학교였다. 한편 조선인 소학교의 경우 4년제 심상소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6년제 심상소학교의 교과 편성을 보면, 수신(12시간), 국어(64시

10) 홍문중(2003) 「조선에서의 일본식민지교육정책 1910~1945」 『학지사』, p.200.

간),¹¹⁾ 조선어는 기존의 2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었다. 다시 말해서 조선어가 교과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11.1%에서 8.3%로 그 비중이 감소되었다.¹²⁾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는 줄어들지 않고 64시간 그대로였다. 그리고 산술(30시간), 국사(4시간), 지리(4시간), 이과(6시간), 직업·도화·창가·제조·가사 및 재봉·수공(남녀별로 시간이 다름)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선어과’가 가설과목 또는 수의과목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修身(윤리 또는 일본제국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과목)교과의 비중이 2배로 증대되고(기존의 6시간에서 12시간)手工科目이 필수과목이 되는 등 이데올로기 교화와 직업 훈련이 1930년대 전반에 비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교과 과정이 변화했다. 4년제 심상소학교의 경우에도 6년제와 동일하게 이데올로기 교화강화, 조선어교육 억압, 직업교육 강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어는 기존의 15시간에서 11시간으로 줄어들었으며, 수신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증가하였고, 수공이 필수 과목이 되었다.¹³⁾ 그리고 조선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제3차 교육령에 맞도록 실행하기 위해서 사범학교 규정을 정하게 된다. 이 사범학교 규정은 당시 교원양성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사범학교에 대한 법령이 마련된 것은 1922년 제2차 교육령 제정 이후이다. 제2차 교육령 제13조에서 ‘사범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사범학교로 한 다’라는 조항이 마련되고 이에 근거하여 ‘사범학교 규정’이 1922년 2월 23일 조선총독부령 제17호로 발표되었다. 그 후 제3차 교육령이 제정되자 ‘사범학교 규정’도 바뀌어 1938년 3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27호로 발표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섯 종류의 사범학교가 있었는데, 일반과정(Common course, 4~5년, 여성전용), 정규과정(Ordinary course, 4~5년 여성전용), 실습과정(2년), 훈련과정(6개월 이상), 그리고 연구과정(1~2년). 실습, 훈련, 연구과정 등 사범학교 졸업자나,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지닌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었다. 실습과정의 2년은 일반과정에 소속(부가)되어 있었으므로 사범학교의 총 학습기간은 7년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범학교로는 춘천(1939), 진주(1940), 충주(1941), 신의주(1942)등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조선에서의 교육정책은 식민지 정책정강으로 국체명징(國體明徵)·선만일여(鮮滿一如)·교학진작(敎學振作)·농공병진(農工並進)·서정쇄신(庶政刷新)을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중일전쟁에 필요한 병력에 조선인을 충원하는 ‘육군특별지원병령’을 추진하였다. 대륙 침략전쟁을 위한 총동원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황민화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교육적 차별을 다소간 완화하여 조선인의 동의를 확보한다

11) 日本語.

12) 홍문중(2003) 「조선에서의 일본식민지교육정책 1910~1945」 『학지사』, p.201.

13) 홍문중(2003) 상계서 p.201.

는 목적에서 제3차 교육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개정의 주요 요지는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기관의 명칭 통일을 통해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 이념의 강화를 꾀한다는 것이었다. 제3차 교육령 개정에 수반하여 1938년 3월 15일 조선총독부령으로 ‘소학교규정’ ‘중학교규정’ ‘고등여학교규정’ ‘사범학교규정’ ‘실업학교규정’ 등을 개정하여 동 규정에 의거해 조선인 교육과 일본인 교육을 규제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조선인교육 대상 ‘보통학교규정’ ‘고등보통학교규정’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은 철폐하였다. 또한 제3차 교육령 이후, 황국신민화와 전시 총동원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어사용강화에 관한 통첩’(1937.3) · ‘사립학교규칙’개정(1937.7) · ‘전시체제령’통첩(1937.7) · ‘황국신민서사’제정(1937.10) · ‘일본어강습소’설치(1938.1) · ‘조선육군지원병령’공포(1938.2) · ‘국가총동원법’적용(1938.5) · ‘학도근로보국대실시요강’발표(1938.6)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창설(1938.7) · ‘조선학생정신연맹’결성(1939.7) 등이 추진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제3차 교육령은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의 평등한 교육과 더 나아가서는 공평한 사회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해서 이었다. 그러나 막상 제도가 시행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교육령 기본취지와는 다른 면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제3차 교육령의 주요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 교육령 제2조의 경우,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 다만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 전항의 경우 조선의 특수 사정에 따라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은 조선총독이 별도의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조선의 특수사정에 따라 특례를 둘 필요”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중일전쟁을 치러야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황민화정책이 필요한 시기임을 의미했다. 더 나아가서 제3조의 경우는, “실업교육은 실업학교령에 의한다. 다만 실업보습학교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실업학교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실업학교의 설립 및 교과서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역시 전시물자 동원을 위한 숙련된 여공을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기에 조일 양국 간의 평등개념을 부각시키기에는 제한적인 내용이었다. 제3차 교육령은 교육기관의 명칭에서 조선인 대상 학교와 일본인 대상 학교의 구별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 명칭도 기존의 조선인학교와 일본인학교로 구분되었던 것이, 초등교육기관은 소학교로,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 · 고등여학교로 통칭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인 · 일본인 공학자의 비중이 다소 늘어나게 되었지만, 명칭의 통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족별 別學體制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제3차 교육령은 식민조선에 이하 네 가지를 강요했다. 첫째, ‘역경 속의 강인’, ‘명철한 국가이념’, 등의 주입을 통하여 조선인들을 일본의 식민으로 육성하는 교육령이었고, 둘째, 조선의 교육체제는 각 단계별로 일본의 그것과 동등한 것으로 개편하려

했던 것과, 셋째, 조선어수업이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일본학교의 수를 늘림으로써 일본어교육과 기술교육의 확대이었다. 위의 네 가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태평양전쟁 중에 제4차 교육령을 실시하게 된다.

V. 제4차 교육령과 조선

제4차 교육령은 1943년 4월 1일 칙령 제113호로 공포되었다. 이는 당시 배경으로,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 본국과 식민지를 전쟁동원체제로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전개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교육령이 1943년 4월 1일에 공포되었지만 실제로는 이전부터 제4차 교육령 개정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는 기존의 소학교제를 ‘국민학교제’로 재편하기 위해 ‘국민학교령’(1941.3.1)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국민학교규정’(1941.3.31)이 공포되어 초등학교에서 ‘조선어’ 교과가 폐지되었다. 또한 1943년에는 일본에서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 ‘실업학교령’이 폐지되고 이를 일괄한 ‘중등학교령’(1943.1.21)이 공포되었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다. 그리고 ‘사범학교령’(1943.3.8)을 개정하여 사범학교를 관립전문학교 정도로 승격시켰다. 이러한 일본본국에서의 교육법령 개정 에 근거하여 조선에서도 제4차 교육령 개정이 시행되었다. 제4차 교육령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인 시점에서 시행되었는데 이는 1942년 6월 미드웨이해전에서 일본이 대패하자 전선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조선인학생을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계산에서 시행되었다.

한편 제4차 교육령은 제3차 교육령과 시기구분을 두는데 무리가 있는데 이는 이하 학교규정 시행년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하내용은 제4차 교육령의 주요내용의 일부인데, 제2조의 경우, “보통교육은 ‘국민학교령’ 및 ‘중등학교령’ 가운데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에 관한 부분에 의한다. 다만 ‘국민학교령’ 가운데 문부대신의 직무 및 ‘중등학교령’ 가운데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前項의 경우에 조선의 특수 사정에 따라 특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 조선총독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제3차 교육령과 동일하다 하겠다. 그리고 제 3조 역시, “실업교육은 중등학교령 가운데 실업학교에 관한 부분에 의한다. 다만 실업보습교육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등학교령’ 가운데 실업학교에 관한 부분의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등 제3차 교육령과 별반차

이 없이 제반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차 교육령시행 직전인 1943년 3월 27일에는 ‘중학교규정’ ‘고등여학교규정’ ‘실업학교규정’ ‘실업보습학교규정’ ‘사범학교규정’ 등이 개정되었고 각 급 학교의 교육목적은 이른바 ‘황국의 도에 기초한 국민의 연성(鍊成)’으로 정해졌다. 이는 제4차 교육령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인을 전쟁터에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된다. 그리고 제4차 교육령 시행시기에는 ‘전시학도체육훈련실시요강’시달(1943.4.26) ·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시달(1943.10.12) · ‘학병제’실시(1943.10.20) · ‘학도군사교육요강 및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공포(1944.3.18) · ‘학도근로령’공포(1944.8.23) · ‘전시교육령’공포(1945.5.22) 등 전시동원 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상기 공포내용들은 주로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한 정책이었기에 제4차 교육령은 이전의 교육령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인들로부터 호응을 얻는데 실패한다. 그래서 일본이 택한 방법은 전체 교과목시간의 40%이상을 일본어부분으로 채워서 애국심 교육에 집중했다.¹⁴⁾ 그리고 체력단련부분에 교과목 20%를 할애했다. 조선어와 조선사를 없앴으며, 같은 기간 동안 상급학교와 사범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습기간을 단축했다. 이는 전시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한 교육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일원화된 교육령 시행을 위해서 일본정부는 조선인교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 주요 내용이 1943년 제정된 ‘사범학교 규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총8장으로 본문 84조와 부칙 24조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총칙에는 사범학교의 취지, 교과구성, 각 교과 요지, 수업일수, 교과용도서 사용 등이 규정되어있고, 2장 편제에는 학급편성, 3장에는 입학 퇴학 휴학 전학 및 징계, 4장에는 학자, 5장에는 복무 및 취직이 규정되어 있다. 제6장에는 연습과 와 연구과 7장에는 부속초등학교 및 부속유치원, 8장에는 잡칙으로 학칙 제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부칙이 있었다.

1943년 제4차 교육령 실시 이후 ‘사범학교 규정’에서 추구된 사범학교 개편 방향은 첫째, 사범학교를 전문학교 정도로 승격한다, 따라서 본과 졸업자는 전문학교 졸업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둘째, 남자사범학교와 여자사범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남자부와 여자부를 두고 한 명의 학교장 밑에서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초등학교 고등과 수료자를 위하여 예과를 둔다. 넷째, 사범학교는 황국의 도를 수련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그리고 황국민의 연성의 중책을 맡을 인물을 연성하는 것을 주안으로 한다. 다섯째, 교과용 도서는 국

14) 홍문중(2003) 『조선에서의 일본식민지교육정책 1910~1945』 『학지사』 p.203.

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섯째, 自費制는 전부 폐지하고 모두에게 학비를 지급 한다 이었다. 그리고 ‘사범학교 규정’의 주요 내용에 따라 교원양성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우선 전국의 15개 사범학교 중에서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는 1943년에, 대구사범학교 및 평양사범학교는 1944년 4월부터 예과와 본과를 둔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1943년도에 대전사범학교, 해주사범학교, 청진사범학교를 신설하고, 1944년도에 원산여자사범학교를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당시 13개의 남자사범학교 중 경성사범학교, 대구사범학교, 평양사범학교 등 3개교는 본과를 둔 전문학교 수준의 사범학교로 개편되고, 여타의 사범학교는 종전대로 심상과, 특설강습과, 강습과(여) 등의 과정을 두어 초등학교 교원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학교 수준으로 승격된 사범학교 이외의 사범학교는 심상과와 강습과를 두어 초등교원을 양성하였다. 본과를 둔 전문학교 수준의 사범학교에서는 1종 훈도를, 심상과를 둔 사범학교에서는 2종 훈도를 각각 양성 하였다. 전문학교 수준의 사범학교의 수업연한과 입학 자격을 살펴보면 본과의 수업연한은 3년이며, 입학 자격은 당해 사범학교 예과 수료자,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하였다. 예과의 입학 자격은 초등학교 초등과 또는 고등과 수료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하였다.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초등과 수료자는 4년, 고등과 수료자는 2년으로 하였다. 심상과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고, 여자는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범학교의 교육과정은 본과 남자부의 교과는 국민과, 교육과, 이수과, 직업과, 체련과, 예능과 및 외국어과로 하고, 여자부는 이 밖에 가정과를 부과하였다. 본과의 교과는 각 교과를 필수로 부과하는 기본 교과와 기본 교과 중에서 하나의 교과를 선택하게 하는 선수 교과로 나누었고, 외국어는 중국어, 독어, 불어, 영어 및 기타 외국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처럼 제4차 교육령 하에 ‘사범학교 규정’은 철저히 교육령을 따르게 되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제5조이다.¹⁵⁾ 결국 제4차 교육령은 전시총동원령을 감안한 제3차 교육령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제4차 교육령이 이전 교육령과 다른 게 있다면, 첫째, 교육체제의 개편을 통해 조선인 학생들을 전투에 투입할 전사로 양성한다는 목표가 표면화 되었다는 것과, 둘째, 조선어와 조선역사의 완전폐지, 그리고 셋째, 학교에서 계획적인 유희교육으로 학생들의 체계적인 노동력동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을 상대로 염두 해 두었을 때 이고 더 나아가서 고등교육 기관인 사범학교학생 교육을 위한 ‘사범학교 규정’은 심상과의 수업을 집중 강

15) 제5조 사범교육은 사범교육령 가운데 사범학교에 관한 부분에 의한다. 다만 동령 가운데 사범학교에 관한 부분의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요함으로써 조선의 일본화가 근본적인 측면에서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및 시사점

일제에 의한 교육령은 일본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따라 4차에 걸쳐 제정되었고, 학교에 관한 규정은 이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1910년의 국권상실로부터 1945년의 광복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에 관한 방침을 교육법규 중심으로 살펴보면, 1911년 교육령, 을 비롯하여, 1922년의 개정교육령, 1938년과 1943년의 3·4차 개정교육령 등 네 차례에 걸쳐 교육령이 공포될 때마다 일제의 식민지교육 정책과 사회정세의 즉각적인 반영이 그때그때 여실히 드러나 있다.

제1차 교육령은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로 제정되어, 그 목적을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의거하여 충량(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으로 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직후에 총독부는 조선인의 민족주의를 억압하고 일본에 동조하도록 하기 위해 무단정치를 실시했는데,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란 이러한 의도에 맞는 인간을 길러내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일본어 보급을 위한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일본의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저급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양성하는 실업교육을 강조했다. 이 법령의 적용대상은 한반도 안에 있는 조선인에 한정되었고, 일본인들과는 달리 보통교육이 4년에 불과한 것 등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설립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이전에 설립되었던 민족주의적인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규칙(1911)·보통학교규칙(1911)·고등보통학교규칙(1911)·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1911)·실업학교규칙(1911)·전문학교규칙(1915) 등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식민지 초기의 교육방침은 1911년 8월에 발표된 제1차 교육령과 ‘사립학교규칙’에 집약된다. 즉 교육령에서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을 빼앗고 문화를 말살하여 일본제국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 나타나 있다.

제2차 교육령은 무단정치에 항거하여 일어난 3·1운동의 영향으로 식민통치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1922년 2월 4일 칙령 제19호로 제정되었다.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1922년에 개정교육령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조선학생들에게 사범학교 및 대학에 진학할 길이 열렸으며, 전반적으로 각급 학교교육

의 정도가 다소 높아졌다. 이 법령의 특징은 민족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한반도 안의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하고, 수업연한을 늘리며, 이전에는 없었던 대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여 일본인은 소학교에, 조선인은 보통학교에 진학하도록 하고 있어서 민족차별은 여전히 진행되었다. 學制上으로는 보통교육의 경우 소학교와 보통학교 모두 예전의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는 대부분 4년제였고, 한국사와 한국지리에 관한 과목은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도 수업연한을 1년씩 연장했다. 사범교육은 이전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실시되었던 것을 사범학교를 독립시켜 운영하도록 했고, 수업연한도 1년에서 남자의 경우는 6년, 여자의 경우는 5년으로 연장했다. 대학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되어 1926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으나, 조선인이 진학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제3차 교육령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뒤 한반도는 군사물자를 조달하는 병참기지로 변화하는 시기와 같아졌다. 이 교육령의 주요점은 교명을 일본인 학교와 같게 한 데 있었다.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라고 하였다. 또 하나는 조선어를 필수 과목에서 수의과목(隨意科目)으로 변경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 폐지를 의미하였다. 일제는 이 기간 중의 교육을 완전히 전시체제화 하고 ‘국체명징(國體明徵)’·‘내선일체’·‘인고단련(忍苦鍛鍊)’ 등 3대 교육방침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1938년 3월에 총독 미나미가 발표한 교육방침으로서, 모든 교육내용에서 일본적인 것이 보다 강화되고 수업을 일본어로 할 것 등이 강요되어, 철저한 황국신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법령은 군국주의의 이념에 따라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법령에 의해 한반도의 교육은 일본 본토와 동일하게 운영되어 보통학교와 소학교는 모두 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각각 개칭되었다. 교육과정도 교과목·교육내용·교수요목 등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동일하게 했으나, 조선어는 선택과목인 수의과목으로 변경했고, 일본어·일본역사·일본지리·수신·공민 등 조선인에게 일본문화와 정신을 강요하는 교과목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제4차 교육령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전시상황에서 황국신민화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1943년 3월에 칙령 제113호로 제정되었다. 소학교는 국민학교로 명칭을 바꾸었고, 중등교육의 수업연한을 단축시켰다. 교육과정상으로는 선택과목이었던 조선어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일본어를 비롯한 다른 과목들은 예전보다 강화되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 급박해지자 1943~45년에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 학도 전시 동원 체제 확립요강, 학도 군사교육강화요강, 학도

동원비상조치요강, 학도동원체제정비에 관한 훈령, 학도동원본부의 설치, 학도근로령 실시규칙, 결전교육조치요강, 전시교육령 등을 공포하여 1945년 8월 해방될 때까지 학생들을 전쟁과 생산현장에 동원시켰다.

이상의 네 번에 걸친 교육령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식민지조선에 대한 교육정책은 서두에서 논의되었던 근대 국가들의 교육정책의 일반적 유형인 국가의 통치형태와 관련된 통제적 교육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첫째, 3.1운동과 이후 문화정책, 그리고 중일전쟁 중에 개정되었던 제3차 교육령을 들 수 있으며, 둘째, 태평양전쟁 중 한국인을 전쟁터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개정된 제4차 교육령인데 이는 일본의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른 식민지조선에 대한 교육정책으로 볼 수 있다.

【参考文献】

- 이만규(1988) 「조선교육사」 『구름출판』
정재철(1985) 「일제의 한국식민지 교육정책사」 『일지사』
한기언 외(1971) 「한국교육사」 『박영사』
홍문중(2003) 「조선에서의 일본식민지교육정책 1910~1945」 『학지사』
李万珪(1949) 「朝鮮教育史 下」 (乙酉文化社)
國史編纂委員會(1967) 「日本侵略下 韓國三十六年史」
孫仁銖(1971) 「韓國近代教育史」 (延世大學校 出版部)
春柳南冥(1923) 「朝鮮統治論」 (京城 朝鮮研究會)
高橋濱吉(1927) 「朝鮮教育史考」 (京城帝國 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朝鮮總督府(1935) 「施政二十五年史」 (朝鮮總督府)
조선총독부 역사교과서 분석 I, 제1차 조선교육령시기(2009)(동북아역사재단)
조선총독부 역사교과서 분석 II, 조선교육령시기(2010)(동북아역사재단)

要 旨

Japanese Colonial Education in Korea : Focus on the Korean Educational Ordina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thesis examined the Korean education policy in the period of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centering on history. Also, this paper focused on the systematization of school at the law making process of the Korean Educational Ordinance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researched school change according to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From the first to fourth revision of the Korean Educational Ordinance, they were designed to make the Korean school system the same as the Japanese educational system. However, along with the enforcement of the third educational ordinance for Korea, Japan waged the Sino-Japanese War and pushed ahead with a series of policies to facilitate the unity of residents in their colonies and recruit soldiers. Japan was aware that education was mandatory for fortifying its colonial rule, and announced the revised educational ordinance for Korea in 1938 in light of wartime conditions. And fourth educational ordinance aimed at nurturing the loyal people of the Japanese emperor and attached importance to history education as means to have children realize their missions. According to the Korean Educational Ordinance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ch led to Korean, first, the textbooks demand that learners be dedicated to Japan and the Japanese emperor in return for his mercy on the ground that the emperor was the very nation. Second, at the same time, the textbooks advocated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on the ground that Korea and Japan shared same ideologies, and third, stressed the status of Japan in the world to have learners take pride in the nation. And the textbooks emphasized that learners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war of aggression as well.

キーワード :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orean educational ordinance,
Japanese colonial educational system.

투 고 : 2011. 5. 31
1차 심사 : 2011. 6. 11
2차 심사 : 2011. 6. 25